의안번호	제686호
의 결	2024년 9월 11일
연 월 일	(제420회)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9월 2일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 **686** 제안연월일 : 2024년 9월 2일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제43조(위원회의 전문가 활용)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3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, 자문위원의 전문분야에 맞는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O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3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(안 제2조제5항)
- 3. 개정규칙안 : 붙임
-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O 관계법령 : 붙임

O 규칙안예고 : 해당없음

O 관련부서 협의 : 위원회 의견 조회 완료

○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자문위원의 위촉) ①~④(생략)

- ⑤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전문분야 자문이 필요하여 기존에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
- 2. 쟁점이 있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다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자문위원의 위촉) ①~④(생략) <신 설>	제2조(자문위원의 위촉) ①~④(생략) ⑤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
	음 각 호와 같다. 1. 전문분야 자문이 필요하여 기존
	에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
	2. 쟁점이 있는 안건 심사 등을 위 해 다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 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
- 2. 예산의 심의 확정
- 3. 결산의 승인
-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- 5. 기금의 설치·운용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
-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
-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-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- 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
- 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